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나현필 010-5574-8925 fix.nhrc@gmail.com)

제목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벌받아라"

날짜 2025-08-04 (총 2쪽)

후속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벌받아라"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는 안창호씨의 반인권적 행위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건에 부당개입하여 소위원회 상정을 막고, 반동성애·내란옹호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의 상임위원 추천, 강사 위촉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이 제보를 받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부정적 발언, 회의석상에서 성적지향을 묻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혐오선동 등 온갖 제보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성 직원에 대한 신체접촉과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다는 성차별 발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한 사회의 동료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못받을 행태를 하는 안창호씨가 왜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씨를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8월 4일(월)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나아가 이후 폭로되는 사안에 따라 추가고발·진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개요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벌받아라"

2025. 8. 4.(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사회 : 김덕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고발 및 진정 취지

- 김동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박한희(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언

-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 기자회견 후 진정서 및 고발장 제출

2025. 8. 4.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고발 요지

1. 개요

- 고발인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피고발인 : 안창호
- 고발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발혐의 :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인권옹호 업무방해(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범죄사실

1) 성소수자 혐오표현 안건 상정 저지

-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한 것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됨
- 담당 조사관은 2025. 5. 28. 위 사안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차별시정국장은 소위원회 상정을 계속 미루었고, 확인 결과 피고발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개별 차별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해당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담당 국장인

차별시정국장이 조사관의 조사결과보고서에 결재하여야 함. 따라서 차별시정국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건상정이 될 수 없음

-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막고 소위원회 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바, 이는 직권을 남용하고 담당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것임

2) 위촉 인권강사 선발 과정에 대한 개입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과 홍보를 주요 업무로 두고 이를 위해 위촉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음. 인권강사 심사 및 선발은 담당 과장의 업무상 권한임
-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2025. 4. 인권강사 양성과정 1차 서류심사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담당 과장과 담당자에게 지인인 변호사가 떨어졌다면 합격자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함
-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구체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은 위촉 인권강사 양성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담당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것임

#진정 요지

1. 개요

- 진정인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피진정인 : 안창호
- 진정취지
 - ① 피진정인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 중에 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혐오선동, 직원에 대한 성적지향 질문, 중국에 대한 비하 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위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임을 확인
 - ② 피진정인 안창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혐오선동 및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표명, 자진사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진정요지

1)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혐오발언 및 양심의 자유 침해

- 피진정인은 이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여 특정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였고, 여호와의 증인을 “한 사람은 자기 죽는지 뻔히 알면서도 진실을 지켜야 되고 또 돌격 앞으로 할 때 공격을 나가야 된다. 반면에 특정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 감독받는 것 모든 것을 다 거부한다. 집총만 거부하는 게 아니다”며 부정적으로 묘사함
-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양심의 자유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여러차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과 도입 이후의 개선을 권고하기까지 했음
-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종교적 다원성에 대한 부정이자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기도 함

2) 업무와 무관한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

- 피진정인은 “동성애자 아니죠? 업무보고 들어간 모과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질문”하였음. 문제가 되자 “직원들의 성적지향 등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차원의 질문이었다”고 해명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성적인 질문, 정치성향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성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판단함
- 이 사건에서도 업무와 전혀 무관한 성적지향 질문을 한 것은 차별행위라 판단하여야 함. 특히 피진정인이 차별금지법 언급을 하며 양해를 구했다는 것은 직원이 성소수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자신의 발언을 달리 하려 했다는 것으로 차별적 의도를 자인하는 것임

#발언 1.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오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도리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도구”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안건을 인권위에서 통과시키며 ‘내란 옹호’라는 비판을 받았고 직원들이 작성한 “위헌적 계엄” 성명에서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까지 있습니다.

수차례의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반동성애 차별 인사들로 채워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확인하거나 성차별적 행동과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언행이 드러나 인권위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가 인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공론장을 마련하며, 차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안창호 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해 인권위 내 반인권적 인사 채용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인권을 외치는 기구가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묵인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이 사회의 존엄과 인권이 달린 일입니다. 광장에서 요구한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더이상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고, 지금까지의 반인권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한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혐오와 반인권 세력으로부터 인권위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을 의결하고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사를 전문위원 위촉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또한 그는 취임 이후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전통’이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온 보수 개신교 인사들을 다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처럼 인권위원회를 성소수자·여성혐오적 인식을 지닌 인사들로 채우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한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요즘에는 대학이나 공직 사회에서 여자가 많아져서 조직이 이상해졌다”, “여자가 일을 못해서 승진을 못한다”는 위원장의 발언을 들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졌다는 제보도 있었고,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제보를 토대한다면, 안위원장의 여성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직장은 여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차별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부당한 일반화이자 낙인으로, 명백한 성차별적 언행입니다. 조직의 장에 의한 성차별적 언행은 직접 들은 당사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조직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속감과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입니다. 상담현장에서 이러한 성차별적 언행들이 ‘이곳은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성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또한 직장 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상대를 동등한 업무 파트너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해명은 잘못된 행동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성차별 시정이라는 기관의 핵심 사명을 실현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오히려 성차별적 언행을 해왔다는 제보는 인권위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부당한 성희롱이나 성차별 상황에 놓인 여성/소수자 시민들이 국가기관의 정의로운 판단과 구제를 받고자 하는 기대가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차별시정업무를 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투운동이 확산되던 시기, 성희롱과 성별,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사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고 매년 약 200건의 성희롱 진정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이외 영역의 성희롱은 규제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사용자’의 기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고용 형태나 업무 관계- 예를 들어 프리랜서 노동자, 교수(또는 교사)와 제자관계-까지 포괄하는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성희롱 구제의 사각지대를 좁혀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20년 넘게 인권위가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차별과 혐오에 대한 정의로운 기준을 정립해온 인권위가 여성/소수자 시민들의 여전한 비빌언덕이 될 수 있도록 즉시 물러나십시오.